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5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5. 5. 12.
3. 회 부 일: 2025.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이 스포츠관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의3(스포츠관람권의 접근성 제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를 관람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이하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스포츠관람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

<u>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위한 특별지원) (생략)</u>	1.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스포츠관람권 배정(현장 판매 수량을 포함한다) 2.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관람권 할인 등 우대 3. 그 밖에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u>제18조의4(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위한 특별지원)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u>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의3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현장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층도 몇

초 또는 몇 분 내로 매진되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은 등 장애인 및 노인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노인 등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이 스포츠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 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부천FC(부천종합운동장)가 홈 경기 가변석 일부를 현장 매표소 구매 전용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티켓 예매 교육을 진행하며, 롯데 자이언츠(사직구장)가 현장 매표소(3루 매표소) 구매 전용으로 배정된 좌석 입장권을 판매(만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하고, 경기도가 도내 연고 18개 프로스포츠단과의 협약을 통해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프로스포츠경기(홈 경기) 입장권을 할인 판매(본인부담 1천원)하는 등 개별 구단 및 시·도 차원에서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임.
-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 관람권 판매업자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 전용 입장권 수량 배정, 입장권 할인 등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특정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 둘째, 개정 시에는 안 제18조의3(스포츠관람권의 접근성 제고 등)과 안 제18조의4(또는 현행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은 모두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바, 안 제18조의4에서 ‘노인’의 스포츠관람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조의 내용을 모두 제18조의3으로 통합하되 조제목을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 셋째,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가 프로스포츠단¹⁾ 등 직접판매

1) < 스포츠 서비스업 분류 >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스포츠 클럽, 실업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 게임단

[제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스포츠 클럽 운영업’(분류코드 91191)에 해당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4. 1.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율성 기반으로 수익성 확보가 핵심인 스포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스포츠산업의 종목별 특성, 구단별 운영 규모, 시설 인프라 등 상이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안 제18조의3은 삭제하고, 대신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대상자에 법적 개념인 ‘노인’을 추가하며, 구체적인 대상자의 범위, 지원 내용 등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임²⁾.

2) <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

＜ 관련 단체 의견 ＞

- 참고로,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46)	박덕흠의원, 2025. 4. 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70)	임오경의원, 2025. 4. 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노약자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18조의3제1항) ○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75)	김재원의의원, 2025. 5. 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장애인·노인)이 스포츠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해 전용 관람권 배정, 할인 등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 한국야구위원회 : 장애인의 관람 예매는 전용 콜센터 메뉴얼 고도화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약자는 일본의 사례처럼 지자체 주관으로 디지털 사용법 교육기회 및 현장 판매 확대가 바람직함
- 한국프로축구연맹: 디지털 취약계층에 별도 좌석 배정 시 미판매 분에 대한 매출 피해 발생 가능, 민간 프로스포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철도, 항공, 콘서트 등 타 업종에도 현장판매 좌석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구단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프로농구연맹: 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구단 등의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스포츠산업 사업자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연도별 스포츠산업 현황

○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8,279	39.2	44,168	38.0	45,192	37.5
스포츠 용품업	30,876	31.6	36,939	31.8	39,078	32.4
스포츠 서비스업	28,513	29.2	34,988	30.1	36,382	30.2
합 계	97,668	100.0	116,095	100.0	120,652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4. 1.

○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스포츠 시설업		13,316	25.2	16,469	25.8	21,324	27.3
스포츠 용품업		25,412	48.0	30,624	47.9	32,916	42.1
스포츠 서비스업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14,190	26.8	16,790	26.3	23,867	30.6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9,297	-	11,254	-	18,058	-
합계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52,918	100.0	63,882	100.0	78,107	100.0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48,025	-	58,346	-	72,29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4. 1.